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생활관 이용 안내

경북대학교 생활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생활관은 경북대학교 재학생과 함께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서로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시는 동안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곳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80 경북대학교 생활관 침성관(문의: 053-950-4045)

입·퇴관 절차

[입주 절차]

- 입주 등록일시: **2023. 1. 5.(목) 10:00~18:00**(입주 등록시간 엄수)
- 입주창구: **운영사 사무실(위치: 침성관 1동 2층)**
- 카드키 수령: 관리실에서 신원 확인(수험표, 신분증 지참) 후 수령

[퇴관 절차]

- 퇴관일시: **2023. 1. 15.(일) 09:00~11:00**까지(퇴관 시간 엄수)
- 관실정리: 퇴관 시 개인 짐 모두 반출
(퇴관 시 파손 등이 있으면 신고 및 변상 후 퇴관해야 함)
- 카드키 반납: 청소 후에 출입 카드키를 반드시 관리실로 반납 후 퇴관

[건물 및 관실은 배부된 카드키를 이용하여 출입]

※ 카드키를 분실했을 경우 침성관 관리실(053-941-0994, 1동 2층)로 즉시 신고 요망

[발열 측정]

- 건물 출입구 화상 카메라 앞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후 발열 측정



생활관 출입방법

[건물 출입]


- 화상카메라 발열 측정 후 건물 출입구에 부착된 검정색 카드리더기 중앙에 **카드키** 센서 부분을 인식



[관실 출입]

- 카드키를 관실 출입문 손잡이 삼입구에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삽입
- 카드키 삽입 후 좌우로 돌리면 잠기고 열림(좌: 잠김, 우: 열림)



| | | |
|-----------------------|---|---|
| | <p>[전기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실 입구에 부착된 키박스에 카드키를 화살표 방향으로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삽입(퇴실 시 반드시 카드키 분리 요망) |  |
| <p>인터넷 사용</p> | <p>[인터넷 사용] 사용자 등록 후 사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등록 방법 경북대학교 생활관 IP등록 페이지 접속(http://dormip.knu.ac.kr)▶등록▶신청하기▶ID, PW 입력▶사용자 정보 입력▶신청하기▶PC 또는 공유기 재부팅(전원 종료 후 재인가) - ID, PW : 방 번호 + 1(ID와 PW가 동일) ※ 예시) 2210호 → 22101 - 신청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IP 주소받기” 로 변경 체크 - 경북대학교 생활관 공지사항 재정 “인터넷 사용자등록 관련” 참조 - 경북대학교 생활관 공지사항 재정 “IP 공유기 사용절차” 참조 | |
| <p>편의시설 이용</p> | <p>[식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중식) 11:30~14:00, (석식) 17:30~19:00 ※ 식권 가격: 4,500원/1장 ○ 식당위치: 지하 1층 <hr/> <p>[세탁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료: (세탁) 1,000원, (건조) 1,000원 (세탁카드) 1,000원 - 별도 세탁카드 구매 후 이용 가능 ※ 세탁카드 구매: 2동 2층 출입구, 3동 1층 출입구 「카드 판매 충전기」 이용) ○ 세탁실 위치(이성간 출입 엄금) - 남: 2413호(2동 4층), 2513호(2동 5층), 3301호(3동 3층), 여: 2613호(2동 6층), 3823호(3동 8층) ※ 지폐교환기: 1동 2층 관리실 앞 <hr/> <p>[편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지하 식당 출구 앞 ○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hr/> <p>[출력, 복사, 스캔] ※ 복사기 2대 설치, 사용 혼잡에 유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지하 식당 입구 맞은편 ○ 운영시간: 상시운영 | |
| <p>금지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간 남녀 구분에 따른 이성 층 출입금지 - 남: 각 동 1~5층 가능, 여: 각 동 출입층, 6~8층 가능 ○ 전열기(전기장판, 커피포트, 가습기 등), 위험물 반입 금지 ○ 외부인을 건물 내부로 입실시키는 행위 ○ 관실 내 음주행위 ○ 생활관내 흡연(흡연은 건물 외부 흡연구역 이용) ※ 흡연구역: 1동 2층 출입구, 2동 1층 출입구, 2동 2층 출입구 2-3동 사이 휴게 벤치 ○ 소음/소란행위(※ 특히 자정 이후 수면시간) 고성방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무단 퇴관자 | <p>즉시 강제퇴관</p> <hr/> <p>경고 조치 경고 누적 시 강제 퇴관</p> <hr/> <p>추후 이용불가 미반납물품 손해배상 청구</p> |

유의 사항

- 생활관 거주 동안 **관생수칙을 확인**하여 시설 이용에 주의 바람([붙임] 참조)
- 생활관 입주 시 건강상태문진표, 입주확인서 제출 필수
- 생활관 이용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함
- 생활관 이용 중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반드시 **행정실로 연락**
- 차량 주차 안내
 - 침성관 지하주차장, 정보전산원 뒤편 주차장, 어학교육원 뒤편 주차장 이용
 - 자가용 전면 유리에 휴대전화 번호 부착
- 개인 소지품 관리 철저(본인 책임)
- **침구류(베개, 이불, 시트커버 등) 지참**(침대 사이즈: 싱글)
- **개인용품(세면도구, 수건, 빨래 건조대 등 개인 필요 물품) 지참**
 - ※ 수건 및 비누 등은 편의점(침성관 지하 식당 출구 앞)에서 구매 가능

문의처

- 주간(평일): 053-950-4045(침성관 행정실), 053-950-5452(법전원 행정실)
- 야간: 053-941-0994(관리실)

◎ **찾아오시는 길**

- 시험장: 제4합동강의동 (건물번호 304)
- 생활관: 침성관 (건물번호 114)



◎ **경북대학교 주소: 우)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 | |
|--------------|--|
| ○ 대구공항 | - 버스노선: 719, 동구2 (20분 소요) - 택 시: 15분 소요 |
| ○ 동대구역 | - 버스노선: 937 (15분 소요) - 택 시: 10분 소요 |
| ○ 대구역 | - 버스노선: 북구2, 503, 410, 706 (25분 소요) - 택 시: 15분 소요 |
| ○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 - 버스노선: 937 |

【붙임】

경북대학교 생활관 생활수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하여 관내 효율적인 생활 교육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수칙은 경북대학교 생활관 생활 수칙(이하 “수칙”이라 한다)이라 명한다.

제2장 관생자치회

제3조(설치) 규정 제6조에 의하여 관생자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4. 14.>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관생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동대표 각 1명, 부장 약간명과 각 동의 층장으로 구성하며, 대학원동은 동대표 및 외국인 대표 약간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관생자치회의 임원은 관생 경력이 1학기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관생 중에서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잔여 임기가 한 학기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한 학기 미만일 때는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관생자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관생들의 후생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질서 유지, 환경 정화 등 공동생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14.>

⑤ 관생자치회의 운영은 관생자치회칙에 의하며, 관생자치회칙이 변경될 경우 생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6.>

⑥ 대구캠퍼스와 상주캠퍼스의 관생자치회는 별도로 구성된다.

제3장 입주와 퇴관

제5조(입주) ① 해당 입주서류를 구비하여 입주 등록을 완료한 자는 배정된 관실에 입실한다.<개정 2015. 6.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는 자는 입주 포기 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입주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환불한다.<개정 2021. 1. 20.>

제6조(관실 배정) 관실은 관장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된 관실은 관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퇴관) ① 퇴관을 원하는 관생은 퇴관 3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yes.knu.ac.kr)의 퇴관 신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퇴관할 때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생활관에서 지급 받은 비품을 직원에게 인계한 후 퇴관 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퇴관한다.

제4장 출입증 관리 및 관내생활

제8조(손혈관 등록 및 출입증 발급) ① 입주 시 손혈관을 등록하여 관내출입과 식당 이용 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침성관, 명의관은 관내 출입 시 출입증을 사용)<개정 2020. 4. 14.>

② 침성관, 명의관, 누리관생은 출입증을 발급 받아 관내 출입 시 항상 휴대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개정 2020. 4. 14.>

③ <삭제 2020. 4. 14.>

④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관리실(침성관, 명의관, 누리관)에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재발급(분

실·훼손)시 재발급에 필요한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4.>

제9조(관생 준수 사항) 관생은 관내의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숙
2. 관실 안의 청결 상태 유지
3. 단정한 몸 가짐
4. 시간 엄수와 질서유지
5. 허가하지 않은 전자(가전)제품 사용금지<개정 2015. 6. 16., 2018. 4. 9.>
6. 도박, 음주, 폭행 및 절도 금지
7. 위험물의 관내 반입 금지
8. 시설물과 비품의 파괴, 손상, 변형 및 임의 이동 금지
9. 관내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금지<개정 2021. 1. 20.>
10. 낙서, 문서의 무단 전시, 무단 배포 및 무단 방송 금지
11. 타인명의 우편물의 수취 또는 개봉 금지
12.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금지
13. 건물 내 금연<개정 2015. 6. 16.>
14. 쓰레기 유기와 환경 오염 행위 금지
15. 단체 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16. 퇴관 시 관실청소와 정리 정돈 엄수
17. 관내 애완동물 사육 금지
18. 출입금지된 구역에 임의 출입하는 행위 금지<신설 2015. 6. 16.>
19. 관내 외부인 임의동반 행위 금지<신설 2015. 6. 16.>
20.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의 위임을 받은 생활조교 지시사항 준수<신설 2015. 6. 16.>

제10조(인원과 관실 점검) ① 인원과 관실 점검은 생활관장 또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단, 응급조치가 요구되는 비상상황, 화재, 도난사고 등의 경우에는 관생이 재실하지 않아도 관실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후 점검 사실을 통지한다.<개정 2015. 6. 16., 2018. 4. 9.>

② 생활조교는 생활관장 및 지도교수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관실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생활조교의 일상 업무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 6. 16.><개정 2018.4.9.>

③ 점검 시 사용금지 물품은 반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 불이행 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압수물품은 퇴관 시 반환한다.)<신설 2015. 6. 16.><개정 2021. 1. 20.>

제11조(식사) ① 식사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다만, 환자는 예외로 한다).

② 식사할 때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식사 예절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일과표) ① 관내 각 건물의 출입시간은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05:00부터 다음날 01:00 까지 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식사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조식: 07:00 ~ 09:00
2. 중식: 11:30 ~ 14:00
3. 석식: 17:30 ~ 19:00

제13조(시설물의 이용 제한) 관실 내 전력은 조명등을 제외하고는 01:00부터 05:00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각 동의 독서실과 컴퓨터실은 24시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5장 납부금

제14조(납부금) 생활관비 납부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이 정한다.

제15조(생활관비) 입주생은 다음 각 호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관리비(매학기 연 2회 및 방학기간)를 일수로 책정하여 정한다.<개정 2021. 1. 20.>
- 2. 식비(매학기 연 2회 및 방학기간)를 식수로 책정하여 정한다.<개정 2021. 1. 20.>

제16조(관리비 계산) ① 학기 중도 입·퇴관자의 관리비는 입·퇴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관일수 3/4이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단, 공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증빙자료 제출)만 환불한다]<개정 2014. 6. 18., 2019. 1. 31.>

② 단, 방학기간 중도 입·퇴관자의 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징수하거나 환불한다

| 입주할 때 | | 퇴관할 때 | |
|------------------|------------|------------------|------------|
| 개관일부터 · 1/2까지 | 전액징수 | 개관일부터 · 1/2까지 | 전액의 1/2 환불 |
| · 1/2이후~방학종료 | 전액의 1/2 징수 | · 1/2이후~방학종료 | 환불없음 |

제17조(식비 계산) ① 중도 입주자의 식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하고, 중도 퇴관자의 식비는 퇴관일을 기준으로 남은식수를 총선택식수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되, 학기 종료 15일 전부터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공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증빙자료 제출)만 환불한다]<개정 2014. 6. 18., 2018. 4. 9.>

- ② 결식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단, 1일 3식을 선택한 학생이 공적인 사유로 5일 이상 결식할 경우 결식일 3일 전에 결식비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6. 18.>
- ③ 도식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개월치 식비(매식기준)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 ④ 방학 중 연수 등을 목적으로 단기 이용 시 식비는 매식기준으로 징수하며, 환불은 하지 않는다.
- ⑤ 매식으로 구매한 식권은 환불하지 않는다.(해당년도 회계종료일까지만 사용가능하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4. 6. 18.>

제18조(시설물 변상) 시설물 손·망실에 대하여는 퇴관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장 면회, 외박 및 우편물

제19조 (생활관 출입 제한과 면회) ①관생은 소속 생활관 이외의 다른 생활관을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2.23.>

- ② 면회자는 안내실 또는 생활조교실에 면회를 신청하여야 하며 생활조교의 승인 후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 ③ 면회라 함은 가족, 친지, 기타 지인들의 방문을 모두 포함한다.<신설 2015. 6. 16.>
- ④ 면회시간은 09:00~20:00까지로 한다.<개정 2015. 6. 16.>

제20조(외출) 외출 중 연락이 필요한 관생은 생활조교에게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개정 2020. 4. 14.>

제21조(우편물) 일반 우편물은 각 관에 비치된 우편함에서 수령하며, 택배는 지정된 택배실에서 수령한다.<개정 2015. 6. 16.>

제7장 관리, 상담, 공고 및 행사

제22조(관리) ① 전기, 수도, 난방 시설 등의 시설물이나 기계, 기구, 비품 등 물품의 파손 또는 고장이 있을 때에는 통합정보시스템(yes.knu.ac.kr) 시설물 고장 신고란에 기재한다.(누리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 신청란에 기재한다.)

② 공용물을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개인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보고와 상담) ① 관생은 관장, 지도교수, 생활조교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관생은 직원, 생활조교, 지도교수 및 관장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③ 관생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관생자치회장이나 임원을 통하여 건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서면 건의자는 반드시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24조(공고와 방송) 관생은 관장이 공고하거나 방송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25조(행사와 집회) 관내의 모든 행사와 집회는 5일 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장 상별과 별점 기준

제26조(상별) ① 관장은 관생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관생에 대하여 지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점을 부여할 수 있고, 상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규정 제 19조 제2항의 우선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독서실, 휴게실 및 식당 등 공공시설물에서의 노력 봉사 : 3점 이하
2. 응급구조, 간병 등 봉사 : 3점 이하
3. 건물 안팎과 관실 환경미화 솔선 수범 : 3점 이하
4. 생활관 명예선양, 공동생활의 모범 등 기타 선행 : 3점 이하
5. 관생자치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의 자원봉사 : 3점 이하

② 관생자치회원은 상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15. 6. 16.>

③ 관장은 관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별점을 부과(제2호의 경우에는 지도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개전의 정이 뚜렷하여 관생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노력 봉사를 행하게 하여 별점을 경감할 수 있다.

1. 별표(별점기준표)에 의한 행위
2. 상기 제1호 외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외부생도 별점을 줄 수 있다.)

④ 관장은 별점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5. 6. 16., 2017.2.23.>

| 별 점 | 처 분 사 항 |
|---------------------------------------|---|
| 1 ~ 6점 | 별점적용기간이 지나면 자동삭제(5점이상 경고할 수 있다) |
| 7 ~ 9점 | 다음학년도 입주제한, 다음학년도 이후 자동삭제 |
| 10점 이상 | 다음학년도부터 입주대상에서 제외 |
| 14점 이상 | 학기 중이라도 즉시 퇴관처리 할 수 있으며 다음학년도부터 입주대상에서 제외 |
| ※ 별점적용기간: 당해년도 1월 1일 ~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 |

⑤ 별점은 개인이 수시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2.23.>

⑥ 관장은 필요 시 관생 상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생들의 상·별점의 적정성 및 퇴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5. 6. 16.>

⑦ 별점 누적에 따른 처분은 개인의 학적변동과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적용된다.<신설 2020. 4. 14.>

[별표]

별 점 기 준 표

| 내 용 | 별 점 |
|--|--------|
| 1. 절도, 폭행, 관내의 기물 또는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 퇴관(14) |
| 2. 관내 생활과 무관한 단체 활동 행위 | 퇴관(14) |
| 3. 관내에서 화재를 일으킨 행위 | 퇴관(14) |
| 4. 관내에 휘발유, 부탄가스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인화물질 및 불법소지물질(마약 등 향정신성물질, 청산가리, 대마초 등) 반입 행위 | 퇴관(14) |
| 5. 배정된 관실을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 또는 양도받은 행위 | 퇴관(14) |
| 6.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 또는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전기장판, 전기난로, 가스버너, 전열기 등) | 14~7 |
| 7. 관내(식당포함) 출입할 때 지정된 출입구를 이용하지 않는 행위 또는 방조행위 | 10 |
| 8. 출입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을 방조한 행위 | 10 |
| 9. 배정된 관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 | 10 |
| 10. 타인 명의의 우편물을 불법 수취하거나 개봉한 행위 | 10 |
| 11. 관실 내 애완동물 사육 행위 | 10 |
| 12. 외부인을 관내에 숙박시킨 행위 또는 21:00 이후 외부인을 잔류시킨 행위 | 5 |
| 13.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 놓거나 파손하는 행위 | 5 |
| 14. 해킹 등 인터넷 사용상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 5 |
| 15. 관내에서 음주, 도박을 한 행위(관내에서 주류를 소유하고 있어도 음주로 간주) | 5 |
| 16. 운동기구, 세면기구 등 공공기물을 관실 내 반입하는 행위 | 5 |
| 17.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행위 | 5 |
| 18. 음식점 수거용 그릇이 배출 되는 음식물을 관내에 반입하는 행위 | 5 |
| 19. 관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관실 외 기타 금연구역(옥상포함)에서 흡연하는 행위] | 5 |
| 20. 만취상태에서 생활관에 들어오는 행위 | 10 |
| 21. 이성을 관내로 대동한 경우 | 10 |
| 22. 도식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도식을 방조하거나 유도한 행위 | 5 |
| 23. 관실 청소와 정리 정돈 불이행(퇴관시포함, 차등부과) | 5~1 |
| 24. 소란 또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차등부과) | 5~1 |
| 25. 외부인을 임의 입실시킨 행위 | 5 |
| 26. OT에 불참하는 행위 | 2 |
| 27. 부재 시 관실 내 소등을 하지 않거나, PC를 끄지 아니한 행위, 냉난방기기를 켜둔채 나가는 행위 | 2 |
| 28. 수도물 사용 후 물을 잠그지 아니한 행위 | 2 |
| 29. 식당 출구를 통하여 들어가는 행위 | 2 |
| 30. 휴게실 내에 음식물 반입 행위 | 2 |
| 31.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주차하거나 타인이 피해를 받도록 주차한 행위 | 2 |
| 32. 관내에 침이나 가래를 뱉는 행위 | 2 |
| 33. 담배꽂초 등을 생활관 주변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 | 2 |
| 34.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 2 |
| 35. 귀관 시간이후 출입 행위(01:00~05:00) (학부만 해당) | 2 |
| 36. 입주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내지 않은 행위(이후 늦어질시 추가별점) | 1 |
| 37. 면회 규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 | 5 |
| 38. 관리자(관장, 지도교수, 생활조교 포함) 지시사항 불이행 | 7~1 |